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5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홍근・박 정・이수진

민병덕 · 김남근 · 염태영

임광현ㆍ김 윤ㆍ이헌승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 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 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 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에 따른 구조·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 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 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 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서 유기 또는 방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③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	
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
	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
	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에 따른 구조・보호 조
	치가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
	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u>는 제외한다.</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1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
	여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
	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
	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
	저히 벗어난 장소에서 유기
	또는 방사한 자
<u>1.</u> ~ <u>8.</u> (생 략)	<u>2.</u> ~ <u>9.</u> (현행 제1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